

선	기관의 장
람	



제 664 호

2005년 11월 25일 금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제650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규칙일부개정규칙) 3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제651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 9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제220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내부위임규정일부개정규정) 12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811호(용역사업집행계획및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 공고(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용역)) 1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812호(용역사업집행계획및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 공고(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용역)) 5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814호(2006년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시행공고) 8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815호(차량초과에따른자동차말소등록예고) 8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816호(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위한공람공고) 8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839호(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와태료독촉(체납)공시송달공고) ... 9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842호(인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을위한공고·열람) 9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843호((긴급)공사입찰공고(인천광역시교육청담당장허물고나 무심기공사)) 9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844호((긴급)공사입찰공고(하춘은행나무공원및주변정비공사)) .. 10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846호(불용-물품(관용차량)매각입찰공고) 10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847호(정비계획수립을위한주민공람공고) 106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05-53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08

회 람								
--------	--	--	--	--	--	--	--	--

규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650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규칙”으로 한다.

제1조(목적)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출장소장”으로 하고

제2조(위임사항)중 “별표1과 같다”를 “별표1,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관련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2005.11.25개정)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 의약품판매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도매상 허가 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다. 도매상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약사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35조제3항 동법 제84조제1항	
2.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 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다.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개수 명령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처분 마. 보고와 업무감사 바.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의료법 제3조 의료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63조의2	
3. 의약품판매업(한약종상, 약종상, 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허가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처분 라.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	약사법시행규칙 제52조 약사법 제35조 동법 제69조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4.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 재개업신고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마약류 도매업제외) 사. 사고마약류의 처리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 승인 차. 마약의 도매보고 카. 마약의 소매보고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파. 허가 등의 제한 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거. 출입·검사와 수거 너. 폐기 명령 등 더. 업무보고 등 러.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 머. 청문 버. 과징금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 제6조제1항제3호 동법 제6조제2항 동법 제7조제2항 동법 제8조제2항 동법 제8조제3항, 제5항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3조제2항 동법 제37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6조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5.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실적 보고	전염병예방법 시행 규칙 제20조의7	
6. 기생충질환예방협회에 관한 권한 가. 예방시설의 설치	기생충질환예방법 제8조	
7.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의 진료 등 보호 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시행령 제22조	
8.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사업 지도 나. 모자보건, 가족계획요원 교육	모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9. 의료장비관리	물품관리법 제35조	

[별표2] (2005. 11. 25 신설)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1. 공원. 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나. 도시공원의 점용 사용 허가 및 취소등 다. 도시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및 관리위탁료 징수 라.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	도시공원법 제5조 내지 제7조 동법 제8조, 제12조의 2, 제20조 제 29조 동법 제14조, 제15조, 제18조 동법 제11조, 제12조 도로법 제3조	

□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사회복지 관련법의 개정, 보건·의료관련 법률의 개정, 사무위임 조례 정비 등에 따른 사무 재위임 사항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 관련 수임기관에 “출장소장”을 추가한다.
- 제2조 관련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651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전결처리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95조 제1항의”를 “제95조 제1항, 사무 관리 규정 제 16조 제2항의”로 하며,

제3조 중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과장”을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과장, 담당 및 주무, 담당자(실무급)”로 하고,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담당 및 주무의 전결사항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및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또는 사실통지 업무
2.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⑥ 실무급의 전결사항

1.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등 창구 즉결민원 업무
2.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4조관련 [별표1] 내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등 기구개편에 따른 소관 대상사무에 대한 조정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사무에 대하여 전결권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무혁신 및 제안제도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련업무 신설
- 민방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
- 방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
- 연안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과로 이관
- 의회사무국 사무전결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규칙에서 삭제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내부위임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11 월 25일

인천광역시남동구 훈령 제 220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내부위임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내부위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내부위임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내부위임규정”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중 “보건소장·출장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별표 1, 2, 3”을 “별표1, 2”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관련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 1, 3”을 “별표1, 2”로하되,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2005.11.25 개정)

보건소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항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항 가. 설치허가 나.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의 장의 교체허가 취소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 동법 제11조

[별표2] (2005.11.25 신설)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항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복지대상자 및 의료급여 신청처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내지 제24조, 제29조 의료급여법 제3조 노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9조 모·부자복지법 제2조
나. 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다.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급여법 제3조
라. 장애인증명서 발급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마. 모·부자가정증명서 발급	동법시행규칙 제8조 모·부자복지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 개 정 사 유

- 사무위임 조례·사무위임규칙 정비에 따른 내부위임사항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함

□ 주 요 내 용

- 제2조 관련 별표 1, 2,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811 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 월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용역명 :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용역

2. 용역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나. 면 적 : $A = 428,267.9\text{m}^2$

다. 용 역 비 : ₩ 608,597천원 범위내(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과업내용 : 환지처분

4. 입찰예정시기 : 2005년 12월중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에 대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서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 국가(산하 정부투자기관포함), 지방자치단체(산하 공기업 포함) 발주사업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면적 $428,000\text{m}^2$ (1건) 이상의 환지계획(환지처분) 실적을 보유한 업체.

라. 위 자격을 갖춘자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이외의 업체는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및공항분야에 신고를 필한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20% 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에는 지역업체포함 2개사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6.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

- 게시기간 : 2005. 11. 21 ~ 2005. 12. 1

※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 기간중 안내를 통하여 현장(용역)설명을 갈음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

- 일 시 : 2005년 12월 1일 목요일(10:00~18:00)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 제출부수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우편접수 불가)

7.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선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5의 1호 및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2005-258호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함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일정점수(90점)이상을 득점한 용역업체로서 90점 이상 용역업체가 5개사 이상일 경우 상위 5개사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한다.

8. 기타사항

- 가.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 업체 참가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해당전문분야 자격현황, 업체 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적증명원)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는 공동도급협정서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공동도급업체 모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구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도시계획과(032-453-2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용역]
事業遂行能力 評價基準 및 作成案内書

2005.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I . 事業遂行能力 評價基準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 [별표5] 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58호 2005. 8. 12)에 의하여 추정가격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용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수행실적 등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지 관련서류의 사본 및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해당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용역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등을 확인 할 수 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 될 시에는 해당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7.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는 우리구의 용역관계자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 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8. 공동도급(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P.Q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참여 지분율 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 참여지분율에 따른 계산 방법

$$A사 \times \text{해당실적} \times \text{지분율} + B사 \times \text{해당실적} \times \text{지분율} = \text{점수합산}$$

-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산정방법

지분율(%)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비고
A사	B사	A사	B사	
80	20	5인×0.8 = 4.0인(4인)	5인×0.2 = 1.0(1인)	소수점 이하 반올림
60	40	5인×0.6 = 3.0인(3인)	5인×0.4 = 2.0(2인)	

※ 참여지분율대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 참여자
1인당 10점 감점하여 평가함.

9. 평가시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평가항목
별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며, 총 집계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
서 반올림한다.
10.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7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
한 점수를 총점으로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점수를 기준
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3.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단, 등급별 배분시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수가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수
보다 많을 경우에는 모두 같은 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하위등급의 배분은
상위 등급의 배분율을 초과하는 만큼을 제외하고 배분한다.(실적이 없는 경
우는 “가”로 평가)
14. 평가기준의 배포는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평가

가.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등급 평가

건설기술자의 평가는 영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자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해당분야 공사, 설계, 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계획경력포함)중 전문분야가 해당기술분야종목인 경력 : 100%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해당분야외 공사, 설계, 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계획경력포함)중 전문분야가 해당기술분야 종목인 경력 : 80%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해당분야 공사, 설계, 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계획경력포함)중 전문분야가 해당기술분야 이외의 경력, 해당분야 감리[시공감리, 책임감리(상주), 설계감리,비상주]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분야 강의경력 : 60%

※ 해당분야 : 환지계획(변경포함) 및 환지처분이 포함된 설계용역, 단지분야 설계용역(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신도시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 도시재개발, 공업용지조성사업)

(2) 분야별(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지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 ① 해당분야의 건설을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중 개인 경력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또는 공사명)과 발주기관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한다.
- ②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한다.
- ③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해당분야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한다.
- ④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이상의 분야에 참여하였을 경우 1개분야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⑤ 기술자문용역, 비관리청사업 등의 참여기술자 경력은 제외한다.

마.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기준

- ① 참여기술자의 실적 인정대상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 또는 기성준공은 제외)한 **환지계획, 환지처분**이 포함된 설계용역(변경포함)사업에 한한다.
- ②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참여기술자는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지 발주청의 용역 관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직전 근무처 개인 경력확인서 제출 분에 한하여 인정)
- ④ 발주청 용역실적증명원에는 반드시 참여기술자 명단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 기재 시 해당실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 참여기술자의 실적(건수,실적금액) 평가지 1건에 대한 기술자 참여기간

이 최소 2개월 이상 참여한 용역으로 건수, 참여기간, 금액은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를 겸임 할 수 없음

바. 분야별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참여기술자의 점수배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도시분야 : 7.0 ○도로분야 : 3.0

※ 점수산정방법 : 해당분야점수 X 가중치 X 1/10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실적 인정대상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 또는 기성준공은 제외)한 **환지계획, 환지처분**이 포함된 설계용역(변경포함)사업에 한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금액에 한하여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신 용 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용역업자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7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7점씩 감점(3월 미만 0.7점, 3월이상 6월미만 1.4점)

- (3)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설도

- (1) 재정상태는 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첨부)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계산예 :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2)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한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단, 당해년도 신설법인으로서 결산공고실적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배점의 70%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한다. (공동참여시 1개 업체의 실적만 있을 경우 1개 업체의 실적만으로 평가)

(나)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 (1)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설계 등 용역업자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단, 실용신안은 심

사등록 또는 기술평가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며, 선등록인 경우는 불인정. 제출서류로서 동 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한다.

- (2) 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공동 등록된 경우 해당점수를 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한다.(2년간합계액/2 또는 1년간합계액/1)
 - 신규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배점의 70%로 평가한다. 단, 공동참여 시 1개사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1개업체의 실적으로 평가
-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업무중첩도 평가

가.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가기관(산하 정부투자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산하 공기업 포함)에서 발주한 PQ대상 용역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참여한 조사,계획,설계,감리(설계감리 포함), 각종 영향평가용역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단, 비상주 감리 또는 PQ대상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자가 아닌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우와 우리구에서 수행하는 용역은 업무중첩도에서 제외한다.

나. 잔여과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도급 수행사업에 대한 참여지분율은 고려치 않는다.

다.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사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점수배분 가중치는 다음과같이 산정한다.

○도시분야 : 7.0 ○도로분야 : 3.0

※ 점수산정방법 : 해당분야점수 X 가중치 X 1/10

라.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사업현황이 우리구에서 각 기관에 별도로 조회한 결과와 확인하여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 항목에 대하여 10점 만점에 0점으로 평가한다.

6. 가·감점사항

가.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가·감점은 교육훈련,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부실벌점 등에 따라 “별표”의 가·감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전차용역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본 용역의 전차용역은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용역”에 한 한다.
- 2) 전차용역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3) 발주청 용역실적 증명원에는 반드시 참여기술자 명단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 기재시 해당실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전차용역 사업 또는 분야책임기술자가 당해용역 사업 또는 분야책임기술자로 참여시 인정한다.

라. 해외설계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2)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 한다.
- 3) 국내 설계업체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업체에 대해 준공건수 1건당 0.5점씩 2점 범위에서 가점. 단,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하도급은 불인정.
- 4) 사실여부의 증빙서류로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와 해당 국가 발주기관과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1. 평가항목별 배점범위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 참여기술자	계		50	
	① 사업책임기술자	소 계	20	절대평가
		등 급	5	
		경 력	7	
		실 적	8	
	② 분야별책임기술자	소 계	20	절대평가
		등 급	5	
		경 력	7	
		실 적	8	
	③ 분야별참여기술자	소 계	10	절대평가
		등 급	2	
		경 력	4	
		실 적	4	
2. 유사용역수행실적	5년간 유사용역 수행	계	15	절대평가
		실적건수	7	
		실적금액	8	
3. 신 용 도	계		10	
	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7	절대평가
	② 재정상태 건실도	소 계	3	절대평가
		자기자본비율	1.0	
		유 동 비 율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절대평가
	① 개발실적		5	
	② 투자실적		10	
	③ 활용실적		0	
	④ R&D사업참여실적		0	
5. 업무중첩도	계		10	절대평가
	기술자의 업무중첩도	사업책임기술자	6	
		분야별 책임기술자	4	
6. 가점·감점	① 교육훈련		1	절대평가
	② 해외설계 수행실적		2	
	③ 전차용역	소 계	3	
		업 체	1.5	
		참여기술자	1.5	
	④ 부실벌점		-5	
	⑤ 연령감점		-2.5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1. 참여 기술자	총 계			100					
	계			50					
	① 사업책임기술자	소 계		20					
		등 급	절대평가	5	도시계획기술사 또는 특급		고급		
					5.0		4.0		
		경 력	절대평가	7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7.0	6.3	5.6	4.9	4.2
		실적건수	절대평가	4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0	3.6	3.2	2.8	2.4
		실적금액	절대평가	4	25억이상	25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4.0	3.6	3.2	2.8	2.4
	② 분야별책임 기술자	소 계		20					
		등 급	절대평가	5	기술사 자격자 또는 특급		고급		
					5.0		4.0		
		경 력	절대평가	7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7.0	6.3	5.6	4.9	4.2
		실적건수	절대평가	4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4.0	3.6	3.2	2.8	2.4
		실적금액	절대평가	4	20억이상	20억미만 ~16억이상	16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4.0	3.6	3.2	2.8	2.4
	③ 분야별참여 기술자	소 계		10					
		등 급	절대평가	2	고급이상		중급		
					2.0		1.5		
		경 력	절대평가	4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4.0	3.6	3.2	2.8	2.4
		실적건수	절대평가	2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2.0	1.8	1.6	1.4	1.2
		실적금액	절대평가	2	15억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2.0	1.8	1.6	1.4	1.2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5	◦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참여지분을 적용					
	회사의 최근 5년간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건수	절대평가	7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7.0	6.3	5.6	4.9	4.2	
		실적금액	절대평가	8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이 하	
					8.0	7.2	6.4	5.6	4.8	
3. 신 용 도	계			10	◦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참여지분을 적용					
	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정지기간	절대평가	7	◦ 용역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 여 합산기간 1월마다 0.7점씩 감점 (1월이하 0.7점, 1월초과 2월미만 1.4점)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 여 합산기간 3월마다 0.7점씩 감점 (3월이하 0.7점, 3월초과 6월미만 1.4점) ※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감점을 합산 하여 감점					
	② 재정상태	소 계		3						
		자본비율	절대평가	1.0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 석” 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스 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단위 : %)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1.0	0.9	0.8	0.7	0.6
		유동비율	절대평가	2.0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 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단위 : %)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2.0	1.8	1.6	1.4	1.2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참여지분을 적용					
	① 개발실적		절대평가	5	◦ 법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인정 - 건설신기술 :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이하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인정건수에 따른 점수가 2점을 초과할 경우 2점으로 평가 ◦ 2인 이상이 공동등록된 경우 해당 점수를 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② 투자실적		절대평가	10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 수					10	9	8	7	6	
5. 업무중첩도	계			10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사업책임 기 술 자	절대평가	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구 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자	절대평가	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별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가중치적용) ◦ 가중치 : 도시분야 7.0, 도로분야 3.0					
					구 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7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① 교육훈련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각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위 2개항목중 유리한 1개항목만 적용					
	② 해외설계수행실적	◦ 국내 설계업체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업체에 대해 준공건수 1건당 0.5점씩 2점 범위에서 가점. -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용역비 10억원 이상 : 100%,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80% · 2억원이상 5억원미만 : 60%,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40% · 5천만원미만 : 20% ◦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참여지분을 적용					
	③ 전차용역 관 련	계		3	◦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참여지분을 적용		
		용역업자	절대평가	1.5	◦ 경과기간에 따라 적용 - 3년 미만 : 100% - 3년이상 ~ 5년미만 : 80% - 5년이상 ~ 10년미만: 60% - 10년이상 : 0% ◦ 공동도급비율 적용		
		참여기술자	절대평가	1.5	구분	전차용역 사업책임기술자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자
					당해용역 사업책임기술자	1.2	1.0
					당해용역() 분야별 책임기술자	1.0	0.8
◦ 전차용역 사업기술자(2개월이상 참여자)가 본용역 참여시 인정 ◦ 경과기간 적용기준은 용역업자 기준 적용							
감 점	④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역공고일 기준 최근2년간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2점이상 10점미만 : 1.0점, 10점이상 15점미만 : 2.0점 - 15점이상 20점미만 : 3.0점, 20점이상 : 5.0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자 : 평가대상 기술자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⑤ 연령감점	◦ 책임기술자 : 만70세이상 : 0.5점 감점 ◦ 분야별책임기술자 : 만65세이상 : 0.5점 감점 ◦ 분야별참여기술자 : 만60세이상 : 0.5점 감점					

Ⅲ. 作成案内書

(1)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본 사업수행 참여신청서는 상기 용역을 수행할 최적업체 선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오니 본 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기한내 우리구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내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중 참여기술자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증명서, 기타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투입예정 기술자는 계약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므로 실제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2) 편성인원

- 참여기술자[총 : 5명]

구 분	계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비 고
인 원(명)	5	1	2	2	

- 사업 책임기술자

전문분야	인정범위	기준인원수
도시계획	당해분야의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1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전문분야	인정범위	기준인원수
도시계획	당해분야의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2
도로및공항	당해분야의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2

3)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신청서 (양식 1)

나. 사업수행능력신청 각서 (양식 2)

다.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양식 3)

라. 표지양식 (양식 4)

마.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양식5)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책임자 각1인(환지계획, 도로 및 공항) 순으로 작성]

바.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 (양식6, 7)

사.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8)

아.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9)

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10)

차. 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양식 11)

카. 업무중첩도 (양식 12)

타. 교육, 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과 관련, 부실벌점 현황 (양식 13)

4) 기 타

가.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분 1부)

나. 규 격 : A₄(210mm×296mm)

다. 표지및지질 : 백색아트지, 백상지

라.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마. 제 본 : 세로 좌철(무사 무선철)

〈양식 1〉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공문서식

(필히 舊 관공서 접수용으로 작성할것)

업 체 명

분류기호

2005년 월 일

수 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참 조 도시계획과장

제 목 용역참여 신청서 제출

1.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수행 능력평가신청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일, 제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귀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합니다.

제출자

대표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붙임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각서 1부.

다.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공동수급시) 1부.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각서

○ 용역명 :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용역

본인은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첨부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 및 부정당업체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제외 등 귀청의 조치에 따를 것이며, 사업능력평가신청서 제출서류는 계약문서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상기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당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 자 할 때에는 귀청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자를 배치하고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귀청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5년 월 일

제출자

대표사

주소 :

회사명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사)

주소 :

회사명 :

대표이사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양식 3〉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 용역명 :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용역

공동수급대표사 : (주)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05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사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공동수급사 :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양식 4〉 표지

관리 번호	
----------	--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05. . .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구 분	(주)00엔지니어링(주간사)	(주)00엔지니어링(공동도급사)
주 소		
공동도급비율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평가서작성자		

※ 전화, FAX번호는 평가서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양식 5>]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자 격	성 명

환지(도시)계획분야
책 임 기 술 자

자격, 성명

도 로 분 야
책 임 기 술 자

자격, 성명

환지(도시)계획분야
참 여 기 술 자

자격, 성명

도 로 분 야
참 여 기 술 자

자격, 성명

1.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각 1인씩 기재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참여할 수 없다.
3.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환지계획분야(도시계획) 1인, 도로및공항분야 1인으로 한다.
4. 공동도급시 PQ평가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가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참여자 1인당 10점 감점처리함

<양식 6>

☑ 사업책임기술자현황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자격·경력 및 실적

1.1. 총괄표

구 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 격 증		경 력		비 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연수)	해당 분야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 임 기술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별 참 여 기술자	○○분야										
	○○분야										
	○○분야										

<작성요령 등>

- ①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 ②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 ③ 경력란에는 건설분야 업무수행경력을 연수로 기재.
- ④ 이직일은 비고란에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용역공고일 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시.

<양식 7>

1.2.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 경력사항

성 명		소 속		본과업 참여 직위 및 분야	
주민등록번호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 ○월 ○일~○년○월○일)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 금액 (천원)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작성요령 등>

-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중 우리구의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 발주청 용역관리감독 : 직전 근무처 개인경력확인서 첨부.
- 용역설계관리 : 참여기술자 명단이 기재된 발주청 용역실적증명원 첨부.
- ② 구분난은 환지계획용역, 환지처분용역으로 표기.
- ③ 참여분야는 도시계획, 도로및공항분야 등으로 구분표기.
-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을 개월수로 기재하여야
하며, 2개월이상 참여기간만 기재(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기준)
- ⑤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원본대조필)

<양식 8>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해당분야 환지계획, 환지처분용역

용역명	용역구분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참여비율	발 주 처	비고
			년 월 ~ 년 월 (개월)				

<작성요령 등>

- ①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중 우리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 ②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계약금액 필히기재)
- ③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하도급 실적만 기재하며 발주처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회사를 명시하고 계약금액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 전체금액을 기재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을 필히 받아 제출.
- ④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하고 하단에 괄호로 전체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공동도급 내용 필히기재)
- ⑤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를 첨부.
- ⑥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9>

☑ 재정상태 건설도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개월)
자 본 금			

2. 재정상태(최근3년간)

구 분	평 균	년	년	년	비 고
1.총 자 산					
2.자 기 자 본					
3.총 매 출 액					
4.유 동 자 산					
5.유 동 부 채					
6.건설기술개발투자액					
7.건설부문 총매출액					
8.전체용역 수주액					
9.자기자본비율(%)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산}} \times 100$
10.유 동 비 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11.기술개발비율					$\frac{\text{건설기술개발투자액}}{\text{건설부문총매출액}}$

< 작성요령 등>

- ①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 사본을 첨부.
- ②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자산비율의 산출과 증빙이 가능하도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일간지 공고분이나 관할세무서 발행 재무재표증명원을 첨부하되 해당란에 형광펜으로 표시.
-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10>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

1. 입찰참가제한 처분현황

처분기관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	처분사유	비 고
	~ (일)		

2.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처분현황

처분명칭	기술자명	처분기관	처분기간	처분사유	비 고
			~ ()		

<작성요령 등>

- ① 용역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처분받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확인서 첨부.
 - ② 용역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제재 받은 관련사항을 기록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 ③ 허위기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 ④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1>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실적

연 번	지정 또는 등록일자 (유효기간)	신기술개발, 특허권, 실용 신안 건명	내 용	등록권자 (인)	당해용역에 필요한 사유	비 고
계						

<작성요령 등>

- ① 용역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이를 기재.
가. 신기술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건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
나. 특허권 : 특허법 관련조항에 의거 특허권으로 설정, 등록된 것.
다. 실용실안권 : 실용신안법 관련 조항에 의거 실용신안권으로 설정, 등록된 것.
- ② 신기술의 경우 지정증서 사본을,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청장이 확인한 등록 원부 등본이나 관련증서 사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유효함.
- ③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 외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실적과 권리 등을 양수하여 등록된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첨부하지 말 것.
- ④ 내용은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서술하며, 내용 없을 시 불인정.
- ⑤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2. 투자실적(최근3년간)

연 번	연 도	기 술 개 발 제 목	기술개발 투자금액 (천원)	건설부문 총매출액 (천원)	비고
계			원	원	
연도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평 균 = %			

〈작성요령 등〉

- ① 용역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0조(기술인력 개발비와 이를 위한 설비투자)에 의한 투자금액이 신고된 것으로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총매출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를 첨부한 것에 한함.
- ② 증빙서류는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등을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교란에 명시.
-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 ④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양식 12>

☑ 업무중첩도

○ 현재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용 업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계약 금액 (천원)	중첩기간 (개월)	발주처	사업의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책임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 임 기술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작성요령 등>

- ① 본 과업 참여기술자의 현재수행중인 용역사업 기재. (사업책임,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하는 경우)
- ② 발주청의 승인을 득 한(또는 신고를 필한)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청, 하도급 계약금액 및 수행 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청의 승인서(또는 확인서) 사본을 첨부.
- ③ 최초 계약이후 총 용역기간 변경시 증빙계약서류 첨부.
- ④ 연차용역 수행에 따른 과업중지기간이 중복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용역기간을 구분 하여 명기하고 증빙계약서류를 첨부.
- ⑤ 용역수행일수 및 중복일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산정하여 기입.
- ⑥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이 시행되는 경우, 차수별로 구분 작성.
- ⑦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순으로 작성.
- ⑧ 용역기간에는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 ⑨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13>

☑ 교육, 해외설계수행실적, 부실벌점 현황

1. 교육훈련 이수현황

참여기술자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1주이상2주미만	2주이상		
	~	~		

<작성요령 등>

-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훈련수료증)를 첨부.
-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2.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최근5년간)

연도	용역명	해당국가 (발주청)	용역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천원) (원화로 기재)	공동도급 비율(%)	비고
				· ~ · (개월)			

<작성요령 등>

- ① 해외설계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해외 발주청에서 발주한 계약건별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며, 당해 설계용역과(환지계획용역) 같거나 유사한 설계등 용역(환지처분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
- ②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용역별 연도순으로 기재.
- ③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총 계약금액과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구분 하여 명시하고 발주청과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 (실적증명서에 해당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 ④ 해당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빙서류로 제출.
- ⑤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⑥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3. 전차용역과 관련현황

1) 용역업자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참여비율	비고
			년 월 ~ 년 월 (개월)			

2) 책임기술자

참여분야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참여기간	계약금액 (천원)	비고
당해용역	전차용역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 작성요령 등〉

① 본 용과 관련된 용역실적에 한하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가. 당해 용역계약서 사본 및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첨부.

나. 구분란에는 환지계획으로 표기.

다. 전차용역 참여실적이 있는 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당해회사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라.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

마. 발주청 용역실적증명원에는 반드시 참여기술자 명단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 기재시 평가에서 제외.

②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4. 누계평균부실별점 현황

구 분	참 가 분 야	회사명 (성 명)	누계평균부실별점	비 고
용역업자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			

〈작성요령 등〉

- ①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 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부실별점을 기재.
- ②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확인서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증명서 첨부.
-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5. 참여기술자 연령

구 분	참 가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작성요령 등〉

- ① 공고일 기준으로 참여기술자 연령(만)을 기재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812 호**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 월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용역명 :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용역

2. 용역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일원

나. 면 적 : A = 185,400m²

다. 용 역 비 : ₩ 426,39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과업내용 : 환지처분

4. 입찰예정시기 : 2005년 12월중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에 대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서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 국가(산하 정부투자기관포함),지방자치단체(산하 공기업 포함) 발주사업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면적 185,000m²(1건) 이상의 환지계획(환지처분) 실적을 보유한 업체.

라. 위 자격을 갖춘자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이외의 업체는 공고

일 현재 우리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분야에 신고를 필한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20%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에는 지역업체포함 2개사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6.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

- 게시기간 : 2005. 11. 21 ~ 2005. 12. 1

※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 기간중 안내를 통하여 현장(용역)설명을 갈음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

- 일 시 : 2005년 12월 1일 목요일(10:00~18:00)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우편접수 불가)

7.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선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5의 1호 및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2005-258호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함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일정점수(83점)이상을 득점한 용역업체로서 83점 이상 용역업체가 5개사 이상일 경우 상위 5개사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한다.

8. 기타사항

- 가.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 업체 참가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해당전문분야 자격현황, 업체 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적증명원)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는 공동도급협정서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공동도급업체 모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구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도시계획과(032-453-2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용역]
事業遂行能力 評價基準 및 作成案内書

2005.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I . 事業遂行能力 評價基準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 [별표5] 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58호 2005. 8. 12)에 의하여 추정가격 3.3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용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수행실적 등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지 관련서류의 사본 및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해당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용역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등을 확인 할 수 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 될 시에는 해당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7.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는 우리구의 용역관계자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 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8. 공동도급(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P.Q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참여 지분율 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 참여지분율에 따른 계산 방법

$$A사 \times \text{해당실적} \times \text{지분율} + B사 \times \text{해당실적} \times \text{지분율} = \text{점수합산}$$

-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산정방법

지분율(%)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비고
A사	B사	A사	B사	
80	20	5인 $\times$ 0.8 = 4.0인(4인)	5인 $\times$ 0.2 = 1.0(1인)	소수점 이하 반올림
60	40	5인 $\times$ 0.6 = 3.0인(3인)	5인 $\times$ 0.4 = 2.0(2인)	

※ 참여지분율대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 참여자 1인당 10점 감점하여 평가함.

9. 평가시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평가항목 별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며, 총 집계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7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3.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단, 등급별 배분시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수가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수 보다 많을 경우에는 모두 같은 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하위등급의 배분은 상위 등급의 배분율을 초과하는 만큼을 제외하고 배분한다.(실적이 없는 경우는 “가”로 평가)
14. 평가기준의 배포는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평가

가.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등급 평가

건설기술자의 평가는 영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자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해당분야 공사, 설계, 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계획경력포함)중 전문분야가 해당기술분야종목인 경력 : 100%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해당분야외 공사, 설계, 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계획경력포함)중 전문분야가 해당기술분야 종목인 경력 : 80%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해당분야 공사, 설계, 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계획경력포함)중 전문분야가 해당기술분야 이외의 경력, 해당분야 감리[시공감리, 책임감리(상주), 설계감리, 비상주]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분야 강의경력 : 60%

※ 해당분야 : 환지계획(변경포함) 및 환지처분이 포함된 설계용역, 단지분야 설계용역(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신도시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 도시재개발, 공업용지조성사업)

(2) 분야별(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지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 ① 해당분야의 건설을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중 개인 경력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또는 공사명)과 발주기관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한다.
- ②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한다.

③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해당분야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한다.

④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이상의 분야에 참여하였을 경우 1개분야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⑤ 기술자문용역, 비관리청사업 등의 참여기술자 경력은 제외한다.

마.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기준

① 참여기술자의 실적 인정대상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 또는 기성준공은 제외)한 **환지계획, 환지처분**이 포함된 설계용역(변경포함)사업에 한한다.

②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참여기술자는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지 발주청의 용역 관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직전 근무처 개인 경력확인서 제출 분에 한하여 인정)

④ 발주청 용역실적증명원에는 반드시 참여기술자 명단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 기재 시 해당실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 참여기술자의 실적(건수,실적금액) 평가지 1건에 대한 기술자 참여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참여한 용역으로 건수, 참여기간, 금액은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를 겸임 할 수 없음

바. 분야별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점수배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도시분야 : 7.0 ○도로분야 : 3.0

※ 점수산정방법 : 해당분야점수 X 가중치 X 1/10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실적 인정대상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 또는 기성준공은 제외)한 **환지계획, 환지처분**이 포함된 설계용역(변경포함)사업에 한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금액에 한하여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신 용 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용역업자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7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7점씩 감점(3월 미만 0.7점, 3월이상 6월미만 1.4점)

(3)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는 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첨부)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계산예 :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2)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한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단, 당해년도 신설법인으로서 결산공고실적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배점의 70%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한다. (공동참여

시 1개 업체의 실적만 있을 경우 1개 업체의 실적만으로 평가)

(나)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 (1)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설계 등 용역업자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단, 실용신안은 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며, 선등록인 경우는 불인정. 제출서류로서 동 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한다.
- (2) 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공동 등록된 경우 해당점수를 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한다.(2년간합계액/2 또는 1년간합계액/1)
 - 신규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배점의 70%로 평가한다. 단, 공동참여 시 1개사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1개업체의 실적으로 평가
-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업무중첩도 평가

가.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가기관(산하 정부투자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산하 공기업 포함)에서 발주한 PQ대상 용역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참여한 조사,계획,설계,감리(설계감리 포함), 각종 영향평가용역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단, 비상주 감리 또는 PQ대상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자가 아닌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우와 우리구에서 수행하는 용역은 업무중첩도에서 제외한다.

나. 잔여과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도급 수행사업에 대한 참여지분율은 고려치 않는다.

다.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사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점수배분 가중치는 다음과같이 산정한다.

○도시분야 : 7.0 ○도로분야 : 3.0

※ 점수산정방법 : 해당분야점수 X 가중치 X 1/10

라.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사업현황이 우리구에서 각 기관에 별도로 조회한 결과와 확인하여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 항목에 대하여 10점 만점에 0점으로 평가한다.

6. 가·감점사항

가.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가·감점은 교육훈련,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부실벌점 등에 따라 “별표”의 가·감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전차용역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본 용역의 전차용역은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용역”에 한한다.

2) 전차용역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발주청 용역실적 증명원에는 반드시 참여기술자 명단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기재시 해당실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전차용역 사업 또는 분야책임기술자가 당해용역 사업 또는 분야책임기술자로 참여시 인정한다.

라. 해외설계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2)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 한다.
- 3) 국내 설계업체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업체에 대해 준공건수 1건당 0.5점씩 2점 범위에서 가점. 단,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하도급은 불인정.
- 4) 사실여부의 증빙서류로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와 해당 국가 발주기관과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1. 평가항목별 배점범위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 참여기술자	계		50	
	① 사업책임기술자	소 계	20	절대평가
		등 급	5	
		경 력	7	
		실 적	8	
	② 분야별책임기술자	소 계	20	절대평가
		등 급	5	
		경 력	7	
		실 적	8	
	③ 분야별참여기술자	소 계	10	절대평가
		등 급	2	
		경 력	4	
		실 적	4	
2. 유사용역수행실적	5년간 유사용역 수행	계	15	절대평가
		실적건수	7	
		실적금액	8	
3. 신 용 도	계		10	
	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7	절대평가
	② 재정상태 건실도	소 계	3	절대평가
		자기자본비율	1.0	
		유 동 비 율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절대평가
	① 개발실적		5	
	② 투자실적		10	
	③ 활용실적		0	
	④ R&D사업참여실적		0	
5. 업무중첩도	계		10	절대평가
	기술자의 업무중첩도	사업책임기술자	6	
		분야별 책임기술자	4	
6. 가점·감점	① 교육훈련		1	절대평가
	② 해외설계 수행실적		2	
	③ 전차용역	소 계	3	
		업 체	1.5	
		참여기술자	1.5	
	④ 부실벌점		-5	
	⑤ 연령감점		-2.5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1. 참여 기술자	총 계			100					
	계			50					
	① 사업책임 기술자	소 계		20					
		등 급	절대평가	5	도시계획기술사 또는 특급			고급	
					5.0			4.0	
		경 력	절대평가	7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7.0	6.3	5.6	4.9	4.2
		실적건수	절대평가	4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0	3.6	3.2	2.8	2.4
		실적금액	절대평가	4	25억이상	25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4.0	3.6	3.2	2.8	2.4
		소 계		20					
	② 분야별책임 기술자	등 급	절대평가	5	기술사 자격자 또는 특급			고급	
					5.0			4.0	
		경 력	절대평가	7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7.0	6.3	5.6	4.9	4.2
		실적건수	절대평가	4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4.0	3.6	3.2	2.8	2.4
		실적금액	절대평가	4	20억이상	20억미만 ~16억이상	16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4.0	3.6	3.2	2.8	2.4
		소 계		10					
	③ 분야별참여 기술자	등 급	절대평가	2	고급이상			중급	
					2.0			1.5	
		경 력	절대평가	4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4.0	3.6	3.2	2.8	2.4
		실적건수	절대평가	2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2.0	1.8	1.6	1.4	1.2
		실적금액	절대평가	2	15억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2.0	1.8	1.6	1.4	1.2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5	◦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참여지분을 적용					
	회사의 최근 5년간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건수	절대평가	7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7.0	6.3	5.6	4.9	4.2	
		실적금액	절대평가	8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이하	
					8.0	7.2	6.4	5.6	4.8	
3. 신 용 도	계			10	◦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참여지분을 적용					
	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정지기간	절대평가	7	◦ 용역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 여 합산기간 1월마다 0.7점씩 감점 (1월이하 0.7점, 1월초과 2월미만 1.4점)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 여 합산기간 3월마다 0.7점씩 감점 (3월이하 0.7점, 3월초과 6월미만 1.4점) ※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감점을 합산 하여 감점					
	② 재정상태	소 계		3						
		자본비율	절대평가	1.0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 석” 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스업 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 준으로 계산. ※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단위 : %)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1.0	0.9	0.8	0.7	0.6
		유동비율	절대평가	2.0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 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단위 : %)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2.0	1.8	1.6	1.4	1.2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참여지분을 적용					
	① 개발실적		절대평가	5	◦ 법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인정 - 건설신기술 :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이하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인정건수에 따른 점수가 2점을 초과할 경우 2점으로 평가 ◦ 2인 이상이 공동등록된 경우 해당 점수를 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② 투자실적		절대평가	10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 수					10	9	8	7	6	
5. 업무중첩도	계			10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사업책임 기 술 자	절대평가	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구 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자	절대평가	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별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가중치적용) ◦ 가중치 : 도시분야 7.0, 도로분야 3.0					
					구 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7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① 교육훈련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각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위 2개항목중 유리한 1개항목만 적용				
	② 해외설계 수행실적	◦ 국내 설계업체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업체에 대해 준공건수 1건당 0.5점씩 2점 범위에서 가점. -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용역비 10억원 이상 : 100%,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80% · 2억원이상 5억원미만 : 60%,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40% · 5천만원미만 : 20% ◦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참여지분을 적용				
	③ 전차용역 관 련	계		3	◦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참여지분을 적용	
		용역업자	절대평가	1.5	◦ 경과기간에 따라 적용 - 3년 미만 : 100% - 3년이상 ~ 5년미만 : 80% - 5년이상 ~ 10년미만: 60% - 10년이상 : 0% ◦ 공동도급비율 적용	
		참여기술 자	절대평가	1.5	구분	전차용역 사업책임기술자
당해용역 사업책임기술자					1.2	1.0
당해용역() 분야별 책임기술자	1.0				0.8	
◦ 전차용역 사업기술자(2개월이상 참여자)가 본용역 참여시 인정 ◦ 경과기간 적용기준은 용역업자 기준 적용						
감 점	④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역공고일 기준 최근2년간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2점이상 10점미만 : 1.0점, 10점이상 15점미만 : 2.0점 - 15점이상 20점미만 : 3.0점, 20점이상 : 5.0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자 : 평가대상 기술자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⑤ 연령감점	◦ 책임기술자 : 만70세이상 : 0.5점 감점 ◦ 분야별책임기술자 : 만65세이상 : 0.5점 감점 ◦ 분야별참여기술자 : 만60세이상 : 0.5점 감점				

Ⅲ. 作成案内書

(1)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본 사업수행 참여신청서는 상기 용역을 수행할 최적업체 선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오니 본 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기한내 우리구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내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중 참여기술자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증명서, 기타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투입예정 기술자는 계약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므로 실제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2) 편성인원

- 참여기술자[총 : 5명]

구 분	계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비 고
인 원(명)	5	1	2	2	

- 사업 책임기술자

전문분야	인정범위	기준인원수
도시계획	당해분야의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1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전문분야	인정범위	기준인원수
도시계획	당해분야의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2
도로및공항	당해분야의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2

3)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신청서 (양식 1)

나. 사업수행능력신청 각서 (양식 2)

다.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양식 3)

라. 표지양식 (양식 4)

마.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양식5)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책임자 각1인(환지계획, 도로 및 공항) 순으로 작성]

바.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 (양식6, 7)

사.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8)

아.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9)

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10)

차. 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양식 11)

카. 업무중첩도 (양식 12)

타. 교육, 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과 관련, 부실벌점 현황 (양식 13)

4) 기 타

가.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분 1부)

나. 규 격 : A₄(210mm×296mm)

다. 표지및지질 : 백색아트지, 백상지

라.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마. 제 본 : 세로 좌철(무사 무선철)

〈양식 1〉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공문서식

(필히 舊 관공서 접수용으로 작성할것)

업 체 명

분류기호

2005년 월 일

수 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참 조 도시계획과장

제 목 용역참여 신청서 제출

1.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일, 제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귀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출자

대표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붙임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각서 1부.

다.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공동수급시) 1부.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각서

○ 용역명 :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용역

본인은 귀청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첨부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를 제출하오며,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 및 부정당업체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제외 등 귀청의 조치에 따를 것이며, 사업능력평가신청서 제출서류는 계약문서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상기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당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 자 할 때에는 귀청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자를 배치하고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귀청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5년 월 일

제출자

대표사

주소 :

회사명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사)

주소 :

회사명 :

대표이사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양식 3〉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 용 역 명 :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용역

공동수급대표사 : (주)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05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사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공동수급사 :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양식 4〉 표지

관리 번호	
----------	--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05. . .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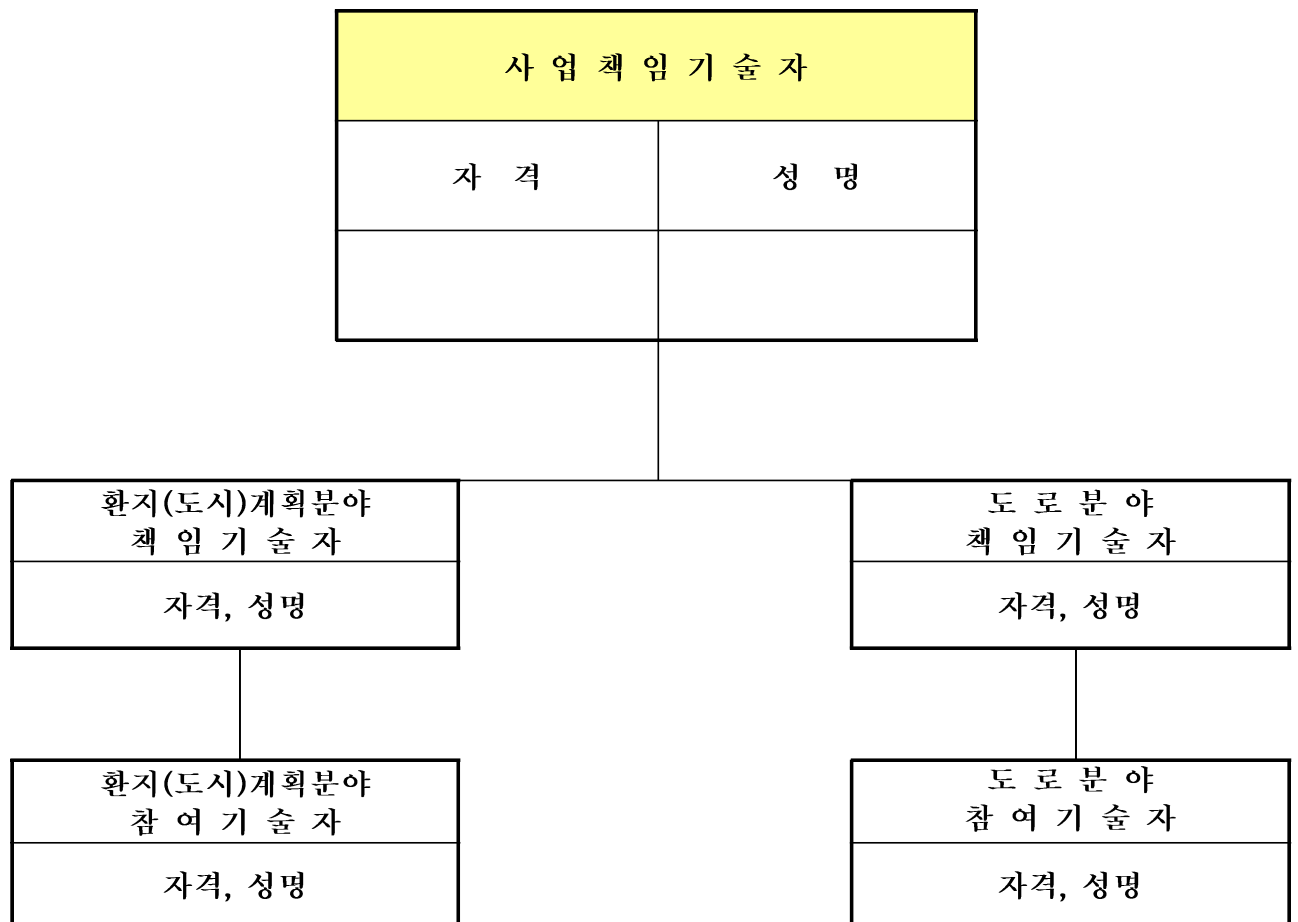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구 분	(주)00엔지니어링(주관사)	(주)00엔지니어링(공동도급사)
주 소		
공동도급비율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평가서작성자		

※ 전화, FAX번호는 평가서작성자과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양식 5>]

참여기술자 조직표



1.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각 1인씩 기재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참여할 수 없다.
3.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환지계획분야(도시계획) 1인, 도로및공항분야 1인으로 한다.
4. 공동도급시 PQ평가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가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참여자 1인당 10점 감점처리함

<양식 6>

☑ 사업책임기술자현황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자격·경력 및 실적

1.1. 총괄표

구 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 격 증		경 력		비 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연수)	해당 분야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 임 기술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별 참 여 기술자	○○분야										
	○○분야										
	○○분야										

<작성요령 등>

- ①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 ②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 ③ 경력란에는 건설분야 업무수행경력을 연수로 기재.
- ④ 이직일은 비고란에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용역공고일 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시.

<양식 7>

1.2.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 경력사항

성 명		소 속		본과업 참여 직위 및 분야	
주민등록번호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 ○월 ○일~○년○월○일)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 금액 (천원)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작성요령 등>

-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중 우리구의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 발주청 용역관리감독 : 직전 근무처 개인경력확인서 첨부.
- 용역설계관리 : 참여기술자 명단이 기재된 발주청 용역실적증명원 첨부.
- ② 구분난은 환지계획용역, 환지처분용역으로 표기.
- ③ 참여분야는 도시계획, 도로및공항분야 등으로 구분표기.
-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을 개월수로 기재하여야
하며, 2개월이상 참여기간만 기재(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기준)
- ⑤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원본대조필)

<양식 8>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해당분야 환지계획, 환지처분용역

용역명	용역구분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참여비율	발 주 처	비고
			년 월 ~ 년 월 (개월)				

<작성요령 등>

- ①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중 우리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 ②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계약금액 필히기재)
- ③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하도급 실적만 기재하며 발주처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회사를 명시하고 계약금액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 전체금액을 기재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을 필히 받아 제출.
- ④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하고 하단에 괄호로 전체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공동도급 내용 필히기재)
- ⑤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를 첨부.
- ⑥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9>

☑ 재정상태 건설도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개월)
자 본 금			

2. 재정상태(최근3년간)

구 분	평 균	년	년	년	비 고
1.총 자 산					
2.자 기 자 본					
3.총 매 출 액					
4.유 동 자 산					
5.유 동 부 채					
6.건설기술개발투자액					
7.건설부문 총매출액					
8.전체용역 수주액					
9.자기자본비율(%)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산}} \times 100$
10.유 동 비 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11.기술개발비율					$\frac{\text{건설기술개발투자액}}{\text{건설부문총매출액}}$

< 작성요령 등 >

- ①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 사본을 첨부.
- ②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자산비율의 산출과 증빙이 가능하도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일간지 공고분이나 관할세무서 발행 재무재표증명원을 첨부하되 해당란에 형광펜으로 표시.
-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10>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

1. 입찰참가제한 처분현황

처분기관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	처분사유	비 고
	~ (일)		

2.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처분현황

처분명칭	기술자명	처분기관	처분기간	처분사유	비 고
			~ ()		

<작성요령 등>

- ① 용역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처분받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확인서 첨부.
 - ② 용역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제재 받은 관련사항을 기록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 ③ 허위기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 ④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1>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실적

연 번	지정 또는 등록일자 (유효기간)	신기술개발, 특허권, 실용 신안 건명	내 용	등록권자 (인)	당해용역에 필요한 사유	비 고
계						

<작성요령 등>

- ① 용역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이를 기재.
 가. 신기술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건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
 나. 특허권 : 특허법 관련조항에 의거 특허권으로 설정, 등록된 것.
 다.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법 관련 조항에 의거 실용신안권으로 설정, 등록된 것.
- ② 신기술의 경우 지정증서 사본을,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청장이 확인한 등록 원부 등본이나 관련증서 사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유효함.
- ③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 외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실적과 권리 등을 양수하여 등록된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첨부하지 말 것.
- ④ 내용은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서술하며, 내용 없을 시 불인정.
- ⑤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2. 투자실적(최근3년간)

연 번	연 도	기 술 개 발 제 목	기술개발 투자금액 (천원)	건설부문 총매출액 (천원)	비고
계			원	원	
연도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평 균 = %			

〈작성요령 등〉

- ① 용역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0조(기술인력 개발비와 이를 위한 설비투자)에 의한 투자금액이 신고된 것으로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총매출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를 첨부한 것에 한함.
- ② 증빙서류는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등을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교란에 명시.
-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 ④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양식 12>

☑ 업무중첩도

○ 현재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용 업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계약 금액 (천원)	중첩기간 (개월)	발주처	사업의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책임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 임 기술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작성요령 등>

- ① 본 과업 참여기술자의 현재수행중인 용역사업 기재. (사업책임,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하는 경우)
- ② 발주청의 승인을 득 한(또는 신고를 필한)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청, 하도급 계약금액 및 수행 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청의 승인서(또는 확인서) 사본을 첨부.
- ③ 최초 계약이후 총 용역기간 변경시 증빙계약서류 첨부.
- ④ 연차용역 수행에 따른 과업중지기간이 중복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용역기간을 구분 하여 명기하고 증빙계약서류를 첨부.
- ⑤ 용역수행일수 및 중복일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산정하여 기입.
- ⑥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이 시행되는 경우, 차수별로 구분 작성.
- ⑦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순으로 작성.
- ⑧ 용역기간에는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 ⑨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13>

☑ 교육, 해외설계수행실적, 부실벌점 현황

1. 교육훈련 이수현황

참여기술자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1주이상2주미만	2주이상		
	~	~		

<작성요령 등>

-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훈련수료증)를 첨부.
-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2.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최근5년간)

연도	용역명	해당국가 (발주청)	용역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천원) (원화로 기재)	공동도급 비율(%)	비고
				· ~ · (개월)			

<작성요령 등>

- ① 해외설계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해외 발주청에서 발주한 계약건별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며, 당해 설계용역과(환지계획용역) 같거나 유사한 설계등 용역(환지처분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
- ②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용역별 연도순으로 기재.
- ③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총 계약금액과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구분 하여 명시하고 발주청과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 (실적증명서에 해당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 ④ 해당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빙서류로 제출.
- ⑤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⑥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3. 전차용역과 관련현황

1) 용역업자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참여비율	비고
			년 월 ~ 년 월 (개월)			

2) 책임기술자

참여분야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참여기간	계약금액 (천원)	비고
당해용역	전차용역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 작성요령 등〉

① 본 용과 관련된 용역실적에 한하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가. 당해 용역계약서 사본 및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첨부.

나. 구분란에는 환지계획으로 표기.

다. 전차용역 참여실적이 있는 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당해회사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라.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

마. 발주청 용역실적증명원에는 반드시 참여기술자 명단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 기재시 평가에서 제외.

②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4. 누계평균부실별점 현황

구 분	참 가 분 야	회사명 (성 명)	누계평균부실별점	비 고
용역업자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			

〈작성요령 등〉

- ①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 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부실별점을 기재.
- ②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확인서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증명서 첨부.
-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5. 참여기술자 연령

구 분	참 가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작성요령 등〉

- ① 공고일 기준으로 참여기술자 연령(만)을 기재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814 호

2006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 관내 사회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1. 2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신청할 수 있는 단체

가. 신청자격 : 구단위 민간사회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제외단체

-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중앙정부, 인천광역시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교부 받은 단체
- (2)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2. 지원대상사업

- ① 국민화합 (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지역갈등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등)
- ② 문화시민운동 (예시 : Clean남동운동, 친절·질서·청결운동,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등)
- ③ 투명사회만들기 (예시 : 부정부패추방, 부정불량식품·교통·환경사범 척결운동 등)
- ④ 자원봉사 (예시 : 이웃사랑나누기, 남동사랑운동, 자원봉사기반구축, 자원봉사연대 등)
- ⑤ 인권·여성·청소년 권익신장 (예시 : 소외계층보호, 여성인력개발, 모성·아동·청소년보호 등)
- ⑥ 자원절약·환경보전 (예시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숨은자원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 ⑦ 안전관리·재난구조 (예시 : 안전문화운동, 재해재난방재, 구조봉사활동 등)
- ⑧ 문화·예술·체육 : (예시 : 향토사연구, 학술, 체육진흥, 연극, 무용행사 등)
- ⑨ 구민참여확대 (예시 : 민·관 파트너쉽 개발, 주민자치참여 등)
- ⑩ 기타 구 권장사업으로 규정 참여의 공익사업

※ 제외대상사업

- 보조금 없이 수행이 가능한 사업
- 불요불급한 1회성·소모성행사, 국내·외 여행 경비 등

3. 제출서류

- 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2부
- 나. 단체 자기소개서 2부
- 다. 지원사업계획서 2부
- 라. 신청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1부
- 마. 신청단체의 회원명단 1부
- 바. 등록증 사본 1부

4.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

- 가.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11. 25(금) ~ 12. 9(금) 15일간 근무 시간내
- 나.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남동구
 - 교부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남동구 사회단체관리 해당부서 또는 총무과
 - ※ 신청서류는 남동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www.namdong.go.kr)
 - 상담전화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총무과 (453-2162)
-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5. 지원사업 선정방법

- 가.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나.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공익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 다. 심사결과 통보 :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심사 결정 후 단체의 교부 신청에 따라 지원
- 나.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다. 사업완료시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제출

7.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함.

※ 참고사항

- 사업신청시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참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지역에 현저한 공익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815 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5. 12. 06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5. 11. 22 ~ 2005. 12. 06(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31라4364	허정순	논현동 563-3	수원지방법원 (94카단21662)	공인식	경기.시흥.신천동 38-6
인천3도5848	김광민	청천동 48-42	인천지방법원 (2000카단6311)	장순석	인천.계양.작전동 856-43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3977)

2005. 11.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816 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공람공고

고잔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제안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개발내용에 이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23일

1.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도시개발구역지정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79-37번지 일원
- 면 적 : 83,200㎡ (25,168평)

나. 개발계획의 개요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	평		
계		83,200	25,168.0	100.0	
주거용지	소 계	47,504	14,369.9	57.1	
	공동주택용지	45,614	13,798.2	54.8	
	준주거용지	1,890	571.7	2.3	
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8,366	2,530.7	10.1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27,330	8,267.4	32.8	
	도 로	8,195	2,479.0	9.8	
	어린이공원	3,729	1,128.0	4.5	
	완충녹지	14,221	4,301.9	17.1	
	주 차 장	1,185	358.5	1.4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제 안 자 : (주)삼정하우징(대표이사:최병근) 외 25인

나. 시행예정자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다. 시행 방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2절 수용 및 사용방식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기타

가. 의견서 제출 및 공람장소 :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93)

나. 관련도서 : 생략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839 호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독촉(체납)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2조제4항(과태료부과징수절차)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미납부자에게 납부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5. 11. 2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역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주)우성건설 (인천30머9388) 등 195건 (별첨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05. 11. 24 ~ 2005. 12. 7
4.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내 시중은행 및 우체국
5.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동법 제59조제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납부고지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 032-453-2445) 끝.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2005-6, 2005.11.24)

순번	과목명	납부자성명	부과금액	물건명	주 소	비고
1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우성건설	300000	인천30마1938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9번지 72호	
2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영중	300000	인천80나43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111번지 21호 5/6 승화빌라 302호	
3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정낙훈	50000	인천80마123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111번지 418호 5동 1반	
4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박지생	200000	인천31도35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6번지 16호 19동 4반	
5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이우산업	300000	인천70가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8번지 9호 (남동공단 88-10)	
6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남성유업(주)	300000	인천62가151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7번지 12호	
7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메닉스코리아(주)	300000	인천52가85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6번지 8호	
8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원우건설	300000	인천30누41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06번지 5호	
9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신한건설(주)	300000	인천7도73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06번지 5호	
10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해우수출포장	300000	인천80가543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334번지	
11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정순석	300000	인천30구22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347번지 2동 4반	
12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협신목재	300000	인천7고762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53번지 10호	
13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우리금속	300000	인천62가155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9번지 4호 남동공단42블록5로트	
14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이영균	300000	인천30무154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78번지 1호 24동 1반	
15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유교혁	300000	인천80가1913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88번지 13호 석리하이츠빌 201호 29동 5반	
16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건축사사무소가이아	300000	인천31투197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번지 58호	
17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이명석	300000	인천1나21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337번지 40동 1반	
18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정해봉	300000	인천5다977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2브릭 52동2반	
19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다라	300000	인천7나460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	
20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우성실업(주)	300000	인천80마166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번지 234호	
21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올라시행	300000	인천32나54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2번지 13호	
22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윤근석	300000	인천80다165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번지 99호 부광빌라 201호 19동 7반	
23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유제민	300000	인천7가14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57번지 1호 9동1반	
24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정수개발(주)	220000	인천80가1545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0번지	
25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동력산업기계(주)	300000	인천30도322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39번지	
26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태극건설	300000	인천30도967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3번지 8호	
27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상우에프앤씨	300000	인천80마203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1번지 10호 남동공단 90블록11로트	
28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정림리싸이클링(주)	300000	인천1라2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2번지 10호	
29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삼부특수제강(주)	300000	인천67가392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23번지 1호	
30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삼정스틸랜드콘	300000	인천8나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0번지 5호	
31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이기균	300000	인천35마435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32번지 3호 하이테크빌라 B01호 13동 3반	
32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대산토건(주)	300000	인천80나52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1번지일화빌딩 202호	
33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마옥남	300000	인천36라746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3번지 9호 6동3반	
34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신용건설	300000	인천86아22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987번지 12호	
35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삼부특수제강(주)	300000	인천7나25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423-1	

순번	과목명	납부자성명	부과금액	물건명	주 소	비고
36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세종인상양행	300000	인천7라4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6번지 9호	
37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한국투링거(주)	300000	인천2라389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2번지 6호 남동공단 168블럭10로트	
38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현대후렌지	300000	인천30고399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7번지 7호 남동공단 163B-8L	
39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마니에르	300000	인천70가655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0번지 2호	
40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리더스산업(주)	300000	인천7가1884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0번지 2호	
41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남대광	300000	인천31마773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06번지 17호 20동 5반	
42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상산건설산업(주)	300000	인천70나67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1번지 8호	
43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나평광고기업(주)	300000	86보106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14번지 15호	
44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수구전기	300000	인천3다724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3번지	
45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나평광고기업(주)	300000	73구108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14번지 15호	
46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미도건설	180000	인천7다62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73번지 29호	
47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이인국	300000	인천3마920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1번지 27호 간석주공아파트 37동 206호 6동 6반	
48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신정개발(주)	300000	인천5다810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9번지	
49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알파정보통신(주)	300000	인천1나138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80번지 1호	
50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조선권	300000	인천31노529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36번지 4호 7동 5반 103호	
51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경남목재	300000	인천30가259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5번지 1호	
52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경기화학약품(주)	300000	인천8가996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남동공단2단지 143블럭	
53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맥시	300000	인천7도52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3번지 6호 남동공단163B/7L	
54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우석엔지니어링	300000	인천30가37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7번지 6호 남동공단145-7	
55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대목가구	300000	인천7도71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41번지 1호 (남동공단 165-2)	
56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손은숙	300000	인천31무309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번지 89호 신세계빌라 C동 402호 22동 5반	
57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배동호	300000	인천3다2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번지 130호 한양빌라 102호 19동 5반	
58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의법)치산의료재단	300000	인천70가13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7번지 7호	
59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대성스치로폴	300000	인천30마92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7번지 4호	
60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제우	300000	인천80마779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2번지 5호 12블럭6로트	
61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리더스산업(주)	300000	인천7고42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0번지 2호	
62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서원기산	300000	인천70가21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5번지 1호 남동공단166-2 8818-4422	
63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청유기공	300000	인천7도746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0번지 4호	
64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서해자원	300000	인천2나52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247번지	
65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부목	300000	인천30무82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7번지남동공단 2단지 95블럭1로트	
66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정림산업(주)	300000	인천7로663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2번지 10호 남동공단 93블럭1로트	
67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태광	300000	인천7도51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2번지 7호 (남동공단148-20)	
68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SYED FAIZAN ALI	300000	27누452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2번지 1호 남동공단 148블럭 14로트	
69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화성산업기계(주)	300000	인천6가151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5번지 12호 남동공단 37블럭13로트	
70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태성기계공업(주)	300000	인천80라616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6번지 4호	
71	자동차정밀검사과테료	(주)선일	300000	인천30다837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0번지 10호 남동공단 106블럭11로트	

순번	과목명	납부자성명	부과금액	물건명	주 소	비고
72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강영숙	20000	인천11562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5번지 30호 원일빌라 301호 5통 4반	
73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박훈식	300000	인천7노967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8번지 4호 B01호 11통 3반	
74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도성개발	300000	인천30디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7번지 13호	
75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옥태	300000	인천31도46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39번지 8호 1통 2반	
76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차준자	300000	인천82기208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44번지 1호 12통 3반	
77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금영종합건설(주)	300000	인천80마687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1번지 5호 금영종합건설(주)	
78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성우에프에씨	300000	인천80마21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1번지 10호 남동공단 2단지 90블럭11롯데	
79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대화트랜스파워	300000	인천47기78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3번지 2호 남동공단96블럭3롯데	
80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한국산업안전검사(주)	300000	인천80거276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78번지	
81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이덕순	300000	인천3마934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21번지 1호 형제연립주택 4동 202호 1통 2반	
82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원무환경(주)	300000	인천80기21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2번지	
83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원무환경(주)	300000	인천80기212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2번지	
84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트라이맥스	300000	인천80디495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3번지 5호	
85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조원복	300000	인천5라648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61번지 1호 7통 3반	
86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두식	300000	인천80기50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번지 12통 6반	
87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승원개발	300000	인천7그25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06번지 19호	
88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삼일화학	300000	인천80라50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8번지 6호 남동공단 48-7	
89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대승목재(주)	300000	인천30디73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11번지 45호	
90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조영렬	20000	인천80라750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번지대양빌라 29-302	
91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경임	170000	인천31라109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81번지 18호 23통 1반	
92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영복	300000	인천5디647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70번지 16호 27/6	
93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박경선	300000	인천80마808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71번지 수정주택 202호 32통 1반	
94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장선주	20000	인천30로49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14번지 남동아파트 104동 907호 16통 5반	
95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장용숙	300000	인천1라8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81번지 1호 해미리홈타운 201호 26통 2반	
96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임승택	300000	인천3모22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4번지뉴서울아파트 101동603호	
97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이영철	300000	인천30마664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63번지 9호 14통 4반	
98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윤종서	300000	인천7라453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39번지 3호 17통 4반	
99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홍찬	20000	인천70라1156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5번지한양B차아파트 103동1105호	
100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성인숙	300000	인천81기8295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44번지 1호 41/3 풍림아이원4-1-1단지아파트 201동	
101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신동일	300000	인천32마342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5번지 4호 4/3 102호	
102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정근봉	300000	인천4디888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24번지 41호 9/1 엔젤타운빌 402호	
103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이정규	300000	인천7고9577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130번지 7호 5통 5반	
104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양근철	300000	인천1나22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3번지 8호 영진디세대주택 B동지3호	
105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최순학	300000	인천70디3639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81번지 4호 17통 2반	
106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정귀수	300000	인천32라513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28번지 18호 심모다세대주택 가동 301호 1통 5반	
107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경옥	300000	인천70디204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5번지 주공아파트 704동 1402호 23통 2반	

순번	과목명	납부자성명	부과금액	물건명	주 소	비고
108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정석종합개발	300000	인천7나984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64번지 11호	
109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영훈	300000	인천8가56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현동 563번지 3호 24/2 노현주공아파트 202동 1001호	
110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화순	20000	25나78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현동 564번지 1호 노현주공아파트 113동 402호 23동 5번	
111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허종석	300000	인천7가46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현동 111번지 347호 11동 4번	
112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선용	300000	인천1더48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78번지 15호 성광디세대 1동 402호 30동 1번	
113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표행원	20000	인천32마987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01번지 16호 다기주주택 1층호 22동 3번	
114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벤엘건설	300000	인천7가34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04번지 42호	
115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양영생	300000	인천7마59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73번지 82호 23동 7번	
116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임순옥	300000	인천30마158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61번지 12동 5번 도시개발아파트 205동 322호	
117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장영호	300000	인천7노644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2번지광명아파트 102동903호	
118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황우열	300000	인천31구47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번지 112호 금호맨션 103호 33동 4번	
119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오학제	300000	인천1러181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57번지 6호 19동 2번	
120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이흥린	300000	36가436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번지 465호 신화빌라7차 2동 B02호 6동 6번	
121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유호갑	300000	인천4가85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1번지 5호 1동 2번	
122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임수화	20000	86구2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8번지 8호 6/1 두용빌라 4동 B02호	
123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수우	300000	인천8가181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50번지 5동 3번	
124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강유태	300000	인천80마55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71번지 10호 2동 2번	
125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이창규	300000	인천31두935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번지 11호 한성골든빌 301호 42동 5번	
126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윤선엽	50000	인천70나10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306동 806호 19동 2번	
127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권세욱	300000	인천80마20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306동 806호 19동 2번	
128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권세욱	300000	인천80라12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306동 806호 19동 2번	
129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백훈자	300000	인천1러67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38번지 태평아파트 206동 206호 11동 3번	
130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GPS(주)	300000	인천7고7907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85번지 9호	
131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이창근	300000	인천5다75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66번지 21호 대림빌라 101호 14동 3번	
132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종학	300000	인천80나383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4번지13/ 5 주공아파트 212동 305호	
133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기석	300000	인천70라33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50번지 11호 대하빌라 D동 302호 10동 2번	
134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박선진	300000	인천32라45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61번지 3호 102호 2동 4번	
135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이철규	300000	인천30마75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3번지주공아파트 143동 501호	
136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진연	300000	인천34라557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91번지 7호 성문아파트 101동309호	
137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대진개발(주)	300000	인천7도333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06번지 11호	
138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이민철	300000	인천31나420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번지 297호 태성맨션 2동302호	
139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최영애	300000	인천3라252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3번지 4호 39/4 대림빌라 1동 101호	
140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정병철	300000	인천7고300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7번지 63호 간석빌라 B동402호	
141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인홍	110000	인천2나936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7번지 40호	
142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이갑구	300000	인천8가995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2번지광명아파트107동1007호	
143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서정원	300000	인천31다161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7번지 주공아파트 501동 910호 20동 3번	

순번	과목명	담당자성명	부과금액	물건명	주 소	비고
144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이기연	300000	인천7교277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19번지11동2반	
145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주)한부통상	300000	인천7가13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번지 15호	
146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주)한부통상	300000	인천5나84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번지 15호	
147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서현석	300000	26나829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9번지 494호 서진빌라 403호	
148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나범근	300000	인천30머528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9번지 609호 상우빌라 B동B01호	
149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반영록	300000	인천7나24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46번지주공아파트 314동304호	
150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이경태	300000	인천47가7306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933번지 13호 테우다세대주택 B동301호	
151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구자혁	300000	인천3로9994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933번지 2호 삼웅다세대주택 다동101호	
152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유승준	300000	인천4마517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01번지 181호 26/5 썬로타운1차 B동 301호	
153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이우봉	300000	인천33도648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번지 3호 19/1 청양빌라 111동 B01호	
154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하현관	300000	인천31루85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928번지 18호 삼보다세대주택 기동 102호 1동 5반	
155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김종호	300000	인천31마64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5번지 1호 두원파크빌라 103동 102호 49동 2반	
156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유진영	300000	인천30가459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9번지 4호 30/1 한진아파트 4동 207호	
157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심영숙	300000	인천80너833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01번지 179호 썬로타운6차 C동 B02호 26동 6반	
158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서옥경	300000	인천31러6877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936번지 27호 5/3 아름다세대주택 E동 301호	
159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정영현	300000	인천7가803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54번지 5호 58동6반	
160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한유경	300000	인천2가64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3번지 3호 논현주공아파트 204동 604호 24동 6반	
161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이기팔	20000	인천7로3422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시화지구 58-8-41 블럭 영남아파트31	
162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이병진	300000	인천70다15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872번지 7호 2동3반	
163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김용태	300000	인천7가2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05번지 21호 미래아트빌 B동 B02호 13동 2반	
164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이 호	300000	인천80다599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춘동 299번지 4호 성그린빌라 402호 15동 7반	
165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홍익호	300000	인천7라40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춘동 304번지 6호 송림빌라 302호	
166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안 영	300000	인천1로59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80번지 19호 메리트힐오피스텔 401호 1동 2반	
167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장민영	300000	인천4다967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3번지 주공아파트 159동 207호 10동 4반	
168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김홍기	300000	인천7가69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4번지 주공아파트 211동408호	
169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김기우	300000	인천32라846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4번지 주공아파트 226동 305호 15동 5반	
170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박금석	300000	인천80다620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번지 49호 29동 6반	
171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주)진산	300000	인천30고58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8번지 5호 남동공단 48블럭6롯데	
172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강호도	300000	인천86마760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7번지 21호 청구빌라 B동 B01호 9동 4반	
173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신우용	300000	인천32가51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109번지 15호 인우상가 102호 21동 1반	
174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육산실업(명)	300000	인천80가86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1036번지진흥아파트 단지	
175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주)정현텔레콤	300000	인천80나7690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1026번지 4호	
176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이우용	300000	인천30도63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5번지 301호 조인하이빌 F동 402호 4동 1반	
177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조경희	300000	인천30너1753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1005번지 주공아파트 804동 1203호 31동 2반	
178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김광복	300000	인천4다9064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902번지 2호 삼화다세대주택 다동202호	
179	지동차정밀검사과테로	김성준	300000	인천5라2864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160-6 11동6반 현광만수아파트 기동503호	

순번	과목명	납부자성명	부과금액	물건명	주 소	비고
180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소연	300000	인천31너719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번지 426호 20/4 신동아아파트 8동 1305호	
181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맹자	300000	인천7로810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58번지 천수빌라 202호 8동 2반	
182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익배	300000	인천30고228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4번지 뉴서울아파트 103동 1004호 10동 4반	
183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임상국	300000	인천33더598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25번지 11호 영진맨션 203호 9동 2반	
184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양춘모	300000	인천80나365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04번지 7호 성신빌라 3동 401호 12동 6반	
185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안병서	300000	인천31모83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2번지 13호 501호 15동 3반	
186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이석배	300000	인천30리217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6번지 3호 7동2반	
187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유석구	300000	인천7가48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79번지 18호 2동 1반	
188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장현만	300000	인천7라178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7번지 9호 37동4반	
189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종성	300000	인천30머71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7번지 9호 29동 2반	
190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주)덕산중건설	300000	인천80다35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63번지 13호 덕신빌딩 303호	
191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박철봉	300000	인천3도74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59번지 6호 35동5반	
192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이수희	300000	인천32너986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370번지 6호 태우빌라 나동 102호 24동 1반	
193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김태형	300000	인천80마939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0번지 73호 14동 2반	
194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윤우영	300000	인천83너30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번지 194호 월드빌라 11동 302호 12동 4반	
195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남길웅	300000	인천30너53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36번지 와일드빌 803호 12동 5반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842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고 · 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 열람 하오니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있는 경우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25일**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 인천도시관리계획(장수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사 업 명 :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

○ 공공 ·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66-1	청 소 년 수련시설	청 소 년 수 려 관	장수동 766-1	21,850	감8,770.3	13,079.7	'98. 1.4	

○ 공간시설(도시자연공원 : 인천대공원) 변경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766-1	인 천 대공원	도시자연 공 원	장수동 766-1	-	8,545	8,545	-	

2. 열람기간

- 구보 및 신문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3.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4.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95)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843 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차량등록민원실 및 남촌도림동사무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라. 공사개요

- 수목식재공 1식
- 시설물공 1식
- 부대공 1식

마. 설계금액 : ₩92,653,000원(추정가격84,230,000원, 부가세8,423,000원)

바.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있는 G2B(국가 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

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05. 11. 28(월) 09:00~2005. 12.02(금) 16:00

나.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5. 11. 28(월) ~2005. 12. 02(금) [도시정비과]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정부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정부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5. 12. 02(금) 17:00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60호(2005. 2. 3)]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61호(2005. 2. 3)] 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자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집행후 낙찰하한가격/예정가격이 87.7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적격심사후 지체없이 결정 통보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161호의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2004년도말 기준 조경식재공사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 부채비율 178.34%, 유동비율 152.19%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92,653,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160호)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032-453-221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go.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844 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하춘은행나무공원 및 주변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남동구 남춘동 558-1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라. 공사개요

- 기초설치공 ----- 1식(데크기초 등)
- 골조설치공 ----- 1식(앵커설치 26개소등)
- 시설설치공 ----- 1식
- 보수수술 및 식재공 ----- 1식
- 부 대 공 ----- 1식

마. 설계금액 : ₩140,558,000원(추정가격 127,780,000원, 부가세 12,778,000원)

바.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두고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있는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05. 11. 29(화) 09:00~2005. 12. 05(월) 14:00

나. 설계도서 열람일시및장소 : 2005. 11. 29(화)~2005. 12. 05(월) [도시정비과]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정부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정부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5. 12. 05(월) 15:00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140,558,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160호)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032-453-2210)또는 도시정비과(032-453-2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go.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남동구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846 호

불용물품 매각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매각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불용물품(관용차량) 매각

나. 매각대상물품

품 명	규격	수량	취득금액 (천원)	년식	주행거리 (km)	예정금액 (원)
중형화물	2.5톤 트레이드 진개덤프	1	15,047	1997	109,898	2,000,000

2. 입찰 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3. 현품공람일시 : 공고기간 중 수시 공람 (남동구청 체육광장 내)

4.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기한 : 2005년 12월 5일 09:00 ~ 18:00

2005년 12월 6일 09:00 ~ 18:00

나. 입찰(개찰)일시 : 2005년 12월 7일 14:00

다. 입찰(개찰)장소 : 남동구청 5층 경영재정과 사무실

5. 입찰참가자격 :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자

6. 제출 서류

가. 입찰등록시

① 입찰참가 신청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② 인감도장 및 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등록 및 입찰시 대리인 참가는 재직증명서(발행 1개월 내), 위임장 1부.

⑤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같음함.

나. 입찰(개찰)시

① 입찰서(우리 구 소정양식) 1부.

② 대리입찰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③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7. 낙찰자 결정방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이상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해 결정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매각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낙찰을 취소합니다.

다.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현물인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라. 차량등록에 따른 제반경비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매각물품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경영재정과(☎032-453-2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847 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695호로 공고하였으나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재 공람 하오니 정비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1.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정비계획 수립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백운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백운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0번지일원	19,074	-	19,074	

3. 건축물의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폐율	20%이하	21.57%이하	
용적률	200%이하	221.02%이하	
높이	최고높이 : 15층이하, 48m이하	최고높이 : 15층이하, 50m이하	
연면적	지상:33,300m ² 이하, 지하:15,000m ² 이하	지상:39,500m ² 이하, 지하:19,200m ² 이하	
용도	공동주택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단란주점 제외)		

3. 기타사항

정비계획(안) 참조

☐ 공람관련

1. 공람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구, 동사무소)
2. 공람내용 : 정비구역 수립(안)
2.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658)
4. 첨부 : 도면게재 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 2005 - 53 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11. 2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도림동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 벽산블루밍 아파트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당초
 - 성명 : (주) G.C (골든캐슬 대표자 : 우 미 숙)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78-25 만수빌딩 302호
- 변경
 - 성명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자 : 김 재 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 남동구 도림동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 32BL 외 1
(사업지 : 도림동 32블럭-1, -2, -3, -4, -5롯트, 산35-3)
- 연 면 적 : 51,299.73㎡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16층~19층, 6개동, 342세대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5 . 11 . ~ 2008 . 4 .